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697)

2025. 0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697

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 05. 26.

다. 회 부 일 : 2025. 05. 29.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조 3,83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5억원(3.0%)이 증액되었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6,622,744	7,383,240	7,161,688	221,551	3.0
일반회계		4,821,828	5,333,444	5,328,948	4,496	0.1
세외수입	경상적	11,754	13,508	13,508	-	-
	임시적	68,615	80,664	80,664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	5	5	-	-
지방교부세		-	-	-	-	-
국고보조금 등		4,732,130	5,221,496	5,217,918	3,578	0.1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24	17,771	16,853	918	0.1
균형발전특별회계		10,552	10,636	10,552	84	-
국고보조금 등		10,552	10,552	10,552	-	-
		-	84	-	8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90,364	2,039,160	1,822,188	216,971	11.9
세외수입	경상적	1,587	1,416	1,416	-	
	임시적	2,376	2,923	2,923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40	774	774	-	-
국고보조금 등		790,312	1,019,580	949,832	69,748	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5,450	1,014,467	867,244	147,223	17

나. 세출예산

○ 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조 5,51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89억원(3.9%)이 감소하였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0,500,153	11,551,820	11,122,968	428,852(3.9%)
행정운영경비	729	813	813	-
재무활동	858,698	1,069,063	911,096	157,967(17.3%)
사업비	9,640,726	10,481,944	10,211,059	270,885(2.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시에서는 소비침체·수출 부진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25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추경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 48조 1,545억 대비 3.4%인 1조 6,146억원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복지실의 추가경정사업은 경제 위기 시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이고 빠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지원으로 생활 전반에서 체감가능한 개선과 변화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 복지실은 총 28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4,368억원), 3개 사업 감액 편성(80억원)을 단행해 기정예산 11조 1,229억원 대비 4,289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남.

- 증액편성 사업은 ① 저소득 취약계층 및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복지안정망 강화 ② 복지시설 이용 시민 안전 확보 및 노숙인, 쪽방촌 주민 생활 안정 ③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 및 법정·재무 활동경비를 반영한 것임.
- 감액편성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추경을 반영한 것임.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복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조 3,832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5억 5천1백만원(3.0%)이 증가하였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6,622,744	7,383,240	7,161,688	221,551	3.0
일반회계			4,821,828	5,333,444	5,328,948	4,496	0.1
	세외수입	경상적	11,754	13,508	13,508	-	-
		임시적	68,615	80,664	80,664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	5	5	-	-
	지방교부세		-	-	-	-	-
	국고보조금 등		4,732,130	5,221,496	5,217,918	3,578	0.1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24	17,771	16,853	918	0.1
균형발전특별회계			10,552	10,636	10,552	84	-
	국고보조금 등		10,552	10,552	10,552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84	-	8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90,364	2,039,160	1,822,188	216,971	11.9
	세외수입	경상적	1,587	1,416	1,416	-	
		임시적	2,376	2,923	2,923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40	774	774	-	-
	국고보조금 등		790,312	1,019,580	949,832	69,748	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5,450	1,014,467	867,244	147,223	17

○ 주된 증액사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1,472억 2천3백만원, 17%)에 있음.

나.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조 5,518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88억 5천2백만원(3.9%)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예산	2025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0,500,153	11,551,820	11,122,968	428,852(3.9%)
행정운영경비	729	813	813	-
재무활동	858,698	1,069,063	911,096	157,967(17.3%)
사업비	9,640,726	10,481,944	10,211,059	270,885(2.7%)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실에서는 9개 과 가운데 디딤돌소득과, 1인가구지원과를 제외한 7개 과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가장 증액금액이 많은 과는 복지정책과로 총 6개 사업에서 3,697억 1천4백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어르신복지과는 보건복지부의 확정·변경내시 통보결과를 반영해 1건의 감액사업 (기초연금지급 사업, 77억 8천1백만원)과 1건의 증액사업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8천7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건수
계	11,122,968	11,551,820	428,852	3.7%	26
복지정책과	4,583,729	4,953,443	369,714	7.5%	6
디딤돌소득과	14,035	14,035	-	-	-
장애인복지과	272,508	278,272	5,764	2.1%	2
장애인자립지원과	1,343,893	1,378,773	34,880	2.5%	10
자활지원과	306,007	306,811	804	0.3%	3
어르신복지과	3,989,771	3,982,076	△7,694	△0.2%	2
고독대응과	75,013	75,968	956	1.3%	3
돌봄복지과	531,619	556,047	24,428	4.4%	5
1인가구지원과	6,393	6,393	-	-	-

〈표〉 복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11,122,968	428,852	11,551,820	
복지정책과 (6건)		4,583,729	369,714	4,953,443	
1	청년서비스 사업단운영	122	△122	0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감추경 (사업단 선정, 심의 적격기관 없음)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2	보훈단체 지원	5,165	330	5,495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강화 ◦근조기 제작 : 240천원 x 80개 = 24백만원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단 사업 확대 : 선양단 활동비 300백만원 (20명 x 40,000원 x 375회) + 사무관리비 6백만원 = 306백만원
3	사회보장 정책개발 및 사업 지원	420	16	435	2025년 장애인자립지원과 격무기피부서 선정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수당 추가 편성 ◦50,000원*26명(현원)*12월
4	의료급여사업 운영	1,822,188	216,971	2,039,160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849,893	144,063	993,956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6	국고보조금 반환	292	8,455	8,747	복지정책과 국비보조금 반환금 ◦기초생활보장급여 7,531백만원 ◦지역사회투자사업 657백만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50백만원 ◦일상돌봄서비스 77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지원 40백만원
장애인복지과 (2건)		272,508	5,764	278,272	
1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38,605	3,644	42,249	'24년 예산조진으로 인한 부족분 지급
2	국고보조금 반환	3,214	2,120	5,334	'2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추가 편성(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장애인자립지원과 (10건)		1,343,893	34,880	1,378,773	
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218	78	1,296	풍납토성 안내센터 내 신규 행복플러스가게(1개소) 설치 비용 편성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등 23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냉장고 등 장비 구매설치비 55백만원
2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27,032	988	28,020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활동지원급여	683,620	24,383	708,003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활동지원가산급여	14,324	5,348	19,672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5	중증장애인연금	165,356	379	165,735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상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매칭시비 증액
6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4,592	288	14,880	지급인원 증가 추세 반영한 예상 부족액 추가 편성
7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545	25	570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8	장애인주간이용 시설 기능보강	293	△88	206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5,928	150	16,078	내구연한(8년) 및 주행거리 30만km 초과한 노후차량(5대) 교체 비용 · 1대 당 30,010천원(5인승)
10	국고보조금 반환	91	3,329	3,420	국고보조금 반환 - 장애인등록진단비 3,329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자활지원과 (3건)		306,007	804	306,811	
1	노숙인 주거 안정 지원	3,693	74	3,767	○ 추경사유 - 호텔후원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한 유휴 시유재산에 대한 구조물 보강 및 내부 리모델링 예산 증액 ○ 산출내역 - 천장공사(텍스 외) : 25 - 도장공사(광텍스) : 10 - 도어공사(목문교체 외) : 3 - 설비공사(누수 외) : 3 - 외부공사(옥상방수, 주차장 바닥보수) : 32 - 현장정리 : 1
2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9,503	130	9,633	○ 추경사유 - 남대문 기부채납시설(사회복지시설) 공간 조성 및 남대문쪽방상담소 이전 ○ 산출내역 - 남대문 기부채납시설(사회복지시설) 공간조성 : 80 - 남대문쪽방상담소 이전비용 : 50
3	노숙인 등 자활작업장 조성 (신규)	-	600	600	○ 추경사유 -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급('24.12.31.) 반영 ○ 산출내역 - 돈의동 자활작업장 조성 : 350 - 서계동 자활작업장 조성 : 150 - 영등포 자활작업장 조성 : 100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어르신복지과 (2건)		3,989,771	△7,694	3,982,076	
1	기초연금 지급	3,520,535	△7,781	3,512,755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2024.12.24.)
2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59,103	87	259,190	·보건복지부 확정 및 변경내시 반영 (2024.12.26., 2025.2.5.) -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상승분 및 아이돌봄사업 교육비 편성
고독대응과 (3건)		75,013	956	75,968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운영	696	32	728	○ 예산 편성 이후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가 신청한 1개구(관악구) 매칭 국, 시비 추경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32,000,000원 **(국비 20,000천원, 시비 12,000천원)**
2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211	223	434	- 추경사유: '21~'25년 미지급 퇴직금 소요액 반영(25명) - 산출내역 : 평균 8,929천원*25명 = 223,225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3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47,092	700	47,793	○ 기정예산은 가내시에 따라 편성된 바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및 시비 추경(국비 252백만원, 시비 274백만원)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로 국비 증액됨에 따라 매칭시비 추가 편성(국비 80백만원, 시비 94백만원) ※ 기정예산 대비 추경 : 국비 332백만원, 시비 368백만원
돌봄복지과 (5건)		531,619	24,428	556,047	
1	긴급복지지원	40,353	1,308	41,661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25.04.21.) - 1,308백만원 편성(국비 872백만원+시비436백만원) * 국비50%, 시비25%, 구비 25%
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4,259	1,300	15,559	◦ 지원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서울형 긴급복지) - 1분기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8.2%(270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3억 증액
3	돌봄SOS 사업 운영	34,766	300	35,066	- '25년 최대 이용금액 상향 (160만원→180만원) 및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 돌봄SOS 서비스 지원 사업비 12백만원*25개구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4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신규)	-	20	20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 20백만원(국비 10백만원+시비10백만원) * 국비 50%, 시비 50%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분담금	195,551	21,500	217,051	- (추경사유) 보건복지부 분담예상액 일부반영 - 보건복지부 분담예상액 대비 본예산이 부족 편성(분담예상액 280,995백만원, 본예산 195,551백만원) - 추경편성시, 올해 지출이 작년지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4년 정산결과 및 당해연도 사용잔액인 공단예치금(64,000백만원)을 반영함

3 사업별 검토의견

가. 청년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별설명서 p.307〉*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지역별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2019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19~34세 청년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하여 19~39세 청년층의 욕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

※ '25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25.3 ~ 12월 (10개월)

○ 사업대상 : 27개 사업단

○ 총 사업예산 : 14.23억원(국비 기준, 서울의 경우 5:5 국시비 부담)

- 인건비 :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 인건비
- 운영비 : 홍보비, 교육비, 간접비, 4대보험료 등 초기운영비 지원
- '25년도 서울시 편성 예산 : 122백만원(국비 61백만원)

○ 사업운영 주체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사업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중 심리지원 서비스, 자체 개발 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식사관리서비스, 영양 관리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등)

○ 서울시에서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22년부터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시 청년사회서비스단 사업 추진 경위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추진 경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신청기관 없어 전액 삭감	본예산 미편성		본예산 편성후 감추경

○ 서울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공고를 통해 참여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총 3개 기관이 지원하였으나 심사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추경 편성해 제출함.

〈표〉 서울시 청년사회서비스단 추가경정예산편성 (안)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간경상사업보조	(x-) 0	(x60,840) 121,680	(x△60,840) △121,680

○ 동 사업은 2019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 청년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직접 제공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한, 서울시는 2023년도 및 2024년에 참여 적격기관 부재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 다시 해당 사업을 편성해온 것은 과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불확실한 추정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최근 2년 연속 참여기관이 없었던 실정을 고려할 때, 현장의 참여수요, 현장기관의 역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2025년도 1회 추경에서 적격기관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집행기관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사업별설명서 p.326〉*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5호[1]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요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함.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이에 따른 상세 수행사업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행사업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1) 상담사업 : 재가 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3)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4) 개발사업 : 개인·단체별 판로 개척 (협의, 계약 등)

5) 조달사업 :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 수의계약 대행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동 계약을 대행

○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위탁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사무의 위탁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위탁추진경위

위탁차수	위탁 기간	위탁법인
1차 위탁	'07.1~'10.1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위탁자 변경	'08.4.30.(잔여기간)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차~6차 위탁	'10.1~'30.3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또한,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형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인 행복플러스가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행복플러스가게 시설 현황

연번	매 장 명	위 치	면 적 (㎡)	개점일
1	목 동 점	양천구 목동서로 33, 1층	96.16	'10.03.22.
2	시 청 역 점	중구 세종대로 101, 시청역 1번출구 지하	57.60	'10.03.22.
3	공 덕 역 점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역 2번출구 지하	34.50	'10.03.22.
4	서 울 시 청 점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서울시청 하늘광장)	80.00	'12.10.08.
5	상 상 나 라 점	광진구 능동로 216, 상상나라 1층	81.49	'13.05.02.
6	대 치 동 점	강남구 도곡로 416, 1층	89.71	'13.12.17.

〈표〉 행복플러스가게 지점 별 매출 실적

(단위: 천원)

구분 \ 매장명		계	목동점	시청역점	공덕역점	서울시청점	상상나라점	대치동점
'24년	계	1,073,409	86,223	188,725	91,406	357,823	305,643	43,589
	카페	957,332	73,898	170,400	80,088	333,039	261,924	37,983
	생산품	116,076	12,325	18,325	11,318	24,785	43,718	5,605
'25. 5월	계	407,815	30,286	66,671	27,807	153,434	115,160	14,457
	카페	351,969	25,205	55,354	24,830	136,103	97,537	12,940
	생산품	55,846	5,081	11,317	2,977	17,331	17,623	1,517

〈표〉 행복플러스 가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장애인 인력 고용) 실적

('25. 5월 기준)

구 분		합계	목동점	시청역점	공덕역점	서울시청점	상상나라점	대치동점
직원 수(명)	소계	38	4	9	4	7	10	4
	장애인	17	3	5	2	2	3	2
	비장애인	21	1	4	2	5	7	2
장애인 고용률(%)		44.7	75.0	55.6	50.0	28.6	30.0	50.0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납동 토성 안내센터 내에 행복플러스 1개점을 추가로 개점하기 위한 카페조성비 및 인건비 등 7천 8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x78,118) 1,295,645	(x78,118) 1,217,645	(x-) 78,000

※ 시립 행복플러스가게 (풍납동 토성 안내센터) 추진 현황

○ 풍납동 토성 안내센터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설계완료 (~'24.9월)

○ 공사 계약·발주, 착공 (~'24.12월)

○ '25.5월 기준 공정률 33%, '25.8월 준공 예정

○ 현재, 서울시와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 제8호에는 위탁사무에 '행복플러스가게 운영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위탁사무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무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단, 사무내용 변경 없이 사무실 이전, 분소 개설 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변경협약 체결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행복플러스가게'를 1개소 확대하는 본 사무는 기존 사무의 분소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민간위탁 사무 지침에 따르면, 사무의 본질적 변경 없이 분소 개설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협약이 가능하나, 향후 동일 방식으로 시설 수 및 운영예산이 반복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위탁사무의 성격과 규모가 종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행복플러스가게 역시 지속적으로 지점수가 늘어나면서 2010년 3개 지점 운영에서 현재 총 6개까지 지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확대 또는 예산 증가 시에는 별도 위탁체결이나 협약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제도개선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노숙인 등 자활사업장 조성 *〈사업별설명서 p.371〉*

○ 해당 사업은 자활작업장 조성을 통해 노숙인 등 취약계층 가운데 근로능력과 자립의지를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통해 그들의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2024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임.

○ 금번 추경편성안을 통해 집행기관에서는 서계동, 돈의동, 영등포동2가 총 3개 지역에 자활작업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돈의동을 제외한 2개 동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음.

〈표〉 노숙인 등 자활작업장 조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민간위탁사업비)	600,000	0	600,000
돈의동 자활작업장	350,000		
서계동 자활작업장	150,000		
영등포동2가 자활작업장	100,000		

○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절차로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23.12.), 지방비 부족분 6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확보한 것임.

○ 현재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은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창업 등 자활사업의 기반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음. 노숙인 중 일부는 국가기초사업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는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어, 노숙인은 배제되거나 장시간 대기 중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자활사업을 노숙인 복지사업에 도입해 노숙인 등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표〉 노숙인 창업사업단 '동행스토어'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노숙인 등 창업사업단 '동행스토어' 창설·운영 지원 ○ 추진분야 : 동행식당(일반음식점), 동행꽃집(화원), 동행카페(베이커리, 카페) 등 ○ 참여대상 : 노숙인, 쪽방주민, 탈노숙 저소득 시민 중 자립능력이 있는 자 ○ 추진방법 : 광역 자활근로 사업단 민간위탁 추진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단 민간위탁 기준 적용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수익금은 중앙자활자금 (30%) 및 서울시 자활활성화지원금(70%)로 적립할 계획임. 그리고 적립된 창업사업단 수익금은 노숙인 사업단 창업자금으로 재투자할 계획임.

○ 노숙인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2015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시설 입소 및 퇴소를 반복하는 만성노숙인의 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22%(약 1,000명~약 2,400명) 까지 추정됨.[2)]

○ 집행기관에서는 노숙인이 만성화되는 것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료한 뒤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경제적 방안 마련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본 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활작업장에서는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동행스토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본 추경예산사업은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신규 자활사업단 운영에 앞서, 해당 사업을 위한 작업장을 조성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향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희망의 인문학'을 이수한 노숙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이들의 참여율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자활사업단의 사업 내용이 기존 자활사업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참여대상자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정규형 외(2023).「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별설명서 p.379〉*

○ 노인일자리 95,201개의 사업비를 지원하기위해 집행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상승분 및 아이돌봄사업 교육비 편성을 통해 보건복지부 확정 및 변경내시 반영하고자 시비 8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19,531) 259,190	(x119,491) 259,103	(x40) 87
산출내역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상승분 20,000원*685명*65% = 8,905천원 아이돌봄사업 교육비 20,000,000원*6개구*65% = 78,000천원		

○ 자치구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30%:시비35:구비35% 분담하고 있음. 노인일자리 담당자 685명의 인건비(인당 20천원) 및 아이돌봄사업 교육비(기관당 20백만원)를 6개구에 추가지원하고자 함.

〈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예산 및 분담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시 예산 (A+B)	국비 (A)	시비 (B)	구비 (C)	총 사업비 (A+B+C)	통계목	분담비율
합계	272,767	123,588	149,179	139,406	412,173	-	-
자치구 사업	259,103	119,491	139,612	139,406	398,50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30 시35 구35
시 직속 사업	13,664	4,097	9,567	-	13,664	사회복지사업보조	국30 시70

〈표〉 '25년 노인일자리 자치구별 사업추진 내역

('25. 1월말 기준, 개, 명, %)

구분 / 자치구		총 사업량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배정	누계	달성률	배정	누계	배정	누계	배정	누계	배정	누계
합 계		**95,201**	**53,111**	55.8%	**69,200**	**41,011**	**16,350**	**6,965**	**7,148**	**4,964**	**2,503**	**171**
1	종로구	2,717	1,963	72.2%	2,042	1,495	300	231	261	237	114	0
2	중 구	2,351	1,659	70.6%	1,723	1,543	475	54	83	57	70	5
3	용산구	1,981	942	47.6%	1,217	694	595	248	169	0	0	0
4	성동구	2,374	1,240	52.2%	1,685	1,135	601	76	88	29	0	0
5	광진구	3,102	1,865	60.1%	2,095	1,155	635	490	231	220	141	0
6	동대문구	3,378	1,373	40.6%	2,383	904	647	248	283	216	65	5
7	중랑구	3,629	2,094	57.7%	2,814	1,479	621	527	129	88	65	0
8	성북구	4,403	1,843	41.9%	3,248	1,492	782	71	303	280	70	0
9	강북구	3,499	1,879	53.7%	2,749	1,633	528	207	157	39	65	0
10	도봉구	3,189	2,896	90.8%	2,143	1,957	541	511	435	428	70	0
11	노원구	5,628	2,013	35.8%	4,472	1,439	698	275	371	299	87	0
12	은평구	5,680	5,536	97.5%	4,203	4,262	862	841	455	418	160	15
13	서대문구	5,120	807	15.8%	4,280	699	568	0	182	105	90	3
14	마포구	3,671	2,713	73.9%	2,650	2,241	482	245	240	178	299	49
15	양천구	3,576	2,483	69.4%	2,576	2,067	712	271	218	144	70	1
16	강서구	5,330	3,127	58.7%	3,871	2,056	996	824	361	247	102	0
17	구로구	4,631	2,876	62.1%	3,641	2,621	600	68	267	186	123	1
18	금천구	3,740	2,706	72.4%	2,459	1,779	797	723	362	204	122	0
19	영등포구	4,015	1,875	46.7%	3,007	1,495	583	47	360	333	65	0
20	동작구	3,253	1,318	40.5%	2,419	1,292	589	0	245	26	0	0
21	관악구	4,639	2,417	52.1%	3,380	1,946	681	171	408	300	170	0
22	서초구	2,224	552	24.8%	1,313	350	555	0	326	202	30	0
23	강남구	3,167	1,091	34.4%	1,894	896	661	15	335	127	277	53
24	송파구	2,561	1,823	71.2%	1,658	1,346	500	307	225	131	178	39
25	강동구	4,343	2,838	65.3%	3,176	2,106	745	407	352	325	70	0
26	시 직속	3,000	1,182	39.4%	2,102	929	596	108	302	145		0

〈표〉 '25년 노인일자리 사업별 추진 내역

('25. 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자치구	종합사회복지관	비영리단체 등 기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합계		53,111	19,477	10,847	7,069	3,728	5,428	2,812	3,750
노인공익활동사업	소계	41,011	10,367	9,634	6,495	3,728	5,180	1,872	3,735
	노노케어	7,484	555	498	2,087	12	2,030	978	1,324
	취약계층지원	84	37	-	-	-	-	-	47
	공공시설봉사	33,198	9,688	9,133	4,318	3,716	3,150	894	2,299
	경륜전수봉사	245	87	3	90	-	-	-	65
노인역량활용사업		6,965	5,175	807	223	-	160	595	5
공동체사업단		4,964	3,794	406	336	-	88	330	10
취업 지원		171	141	-	15	-	-	15	-

○ 노인공익활동사업이 전체 일자리의 73%를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전체일자리의 31%를 운영하고 있음.

○ 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정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돼 사업 운영 실무를 맡음. 참여자 모집·선발, 참여자 교육·활동 관리, 참여자 임금 지급, 신규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여야 함.[3)]

-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담당자 임금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따라 책정되는데 지난해 월 206만 1,000원, 올해 월 209만 7,000원을 기본급으로 받음

3) 탁지영 기자(2025.3.31.). [단독] '21년째 비정규직'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자를 아시나요…노조 첫 출범(경향신문)

- 노인 일자리 담당자 대다수(83.1%)가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회복지직과 동일하게 대우받지 않음.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도 아니다. 신입이거나 n년 차이거나 상관없이 복지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고 있음.

〈표〉 '25년 노인일자리 인력현황 및 배치 기준

구 분		2024	2025
인력 현황(복지부 확정내시)		662명	709명
지원내용	인건비(보험료 포함)	연 29,580천원	연 30,090천원
	복지포인트(전액시비)	연 30만원	연 30만원
	명절수당 등	연 2,787천원 이내	연 2,829천원 이내
	기타 제수당	부대경비의 5% 이내 편성 가능(취업알선형 10% 이내)	
배치기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150명당 1명	참여자 150명당 1명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100명당 1명	참여자 100명당 1명
	공동체사업단	참여자 120명당 1명	참여자 120명당 1명
	취업알선형	참여자 100명당 1명	참여자 100명당 1명

○ 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경력과 무관하게 1년 단위로 기관과 채용 계약을 맺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의 '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에 따르면, 사업수행 기관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시니어 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 확보'로 나타난 바 있음[4].

4) 윤민석 외(2020.)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 업무량 가중과 인건비 부족 등 전담 인력의 일자리 여건이 열악함을 강조하였고, 전담 인력 이 부족하고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재정 일자리의 양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지원기관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재정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담 인력이 사업 기간과 같은 기간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시니어를 위한 재정일 자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 발생 이유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사업비 일부로 책정된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시니어 일자리 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담 인력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음.

○ 보건복지부(2024.09.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노인일자리 관리에 내실을 기하려면, 담당자 한 명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150명을 관리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현 임금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반영하여,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참여 노인의 수를 완화하고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정부에서도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지자체 재원 또는 수행기관 수입으로 노인일자리 담

당자 급여를 인상한 수행기관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 노인일자리 노년기 소득보전과 함께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 확대는 필요함. 또한 정확한 추계를 통한 편성이 필요하며 추경 확정 시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 실제 참여 예상되는 인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임.

마.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별설명서 p.387〉*

○ 서울재가관리사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를 근거로 장기요양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가사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신변활동지원, 외출동행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96년 서울가정도우미(현 재가관리사) 운영계획으로 유급가정봉사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 노사단체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정년조정(65세→60세), 중증지원(경증은 무급가정봉사원), 신규중단(일몰사업)으로 계약함. 2009년 서울재가관리사로 명칭을 변경 후 2021년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 후 매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하고 있음.

○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재가서비스가 중증은 요양보호, 경증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정착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재가관리사는 정체성이 모호하고 일몰사업으로 인한 관리 소홀에 따라 노동의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연도별 재가관리사 재직 및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재직 인원	144	119	98	78	64	49	31	18	12	6	3
퇴직 인원	25	21	20	14	15	18	13	6	6	3	1
해당자치구	25	24	24	23	23	20	18	11	10	6	3

※ '25년 기준 25개 자치구 중 노원·양천·관악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사업 종료

〈표〉 서울재가관리사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2023년	12명 서울재가관리사 활동, 137명 어르신 지원
2024년	6명 서울재가관리사 활동, 51명 어르신 지원
2025년	3명 서울재가관리사 활동, 28명 어르신 지원

○ 서울재가관리사는 정년(60)세가 보장이 되는 준상용직으로 자치구에서 고용하게 되어 있음. 하절기는 7.5시간, 동절기는 6.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8~10명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표〉 서울재가관리사 추가경정 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B)	증감(A-B)	비율(%) ((A-B)*100)/B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4,452	211,227	**223,225**	106%

○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16년 임금체결부터 재가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식대, 교통비, 명절휴가비까지 확대되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함

◈ **'16년 임금협약 : 통상임금 범위에 보조수당 및 명절휴가비 반영**
- 통상임금 : 기본임금 + 상여금('15년 반영) + **식대 + 교통비 + 명절휴가비**
- (시간급) **통상임금 : 8,610, 평균임금 : 7,590**

* **통상임금(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196시간, 약 26일)**
= 기본임금, 상여금, 식대, 교통비, 명절휴가비
* **평균임금(3개월 총일수 기준, 약 31일)**
= 기본임금, 상여금, 식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차휴가수당

○ 실제 퇴직금을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매뉴얼'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퇴직자들이 최근 대법원 판례[5]를 계기로 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

5)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변경(대법원2023다302838) :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 중 '고정성' 폐지로 인하여 상여금 및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추가 인정됨

〈표〉 서울재가관리사 미지급 퇴직금

(단위 : 명, 천원)

연도	미지급 퇴직금(A)	퇴직자(B)	총합(A*B)
합계		25	223,225
2021	8,278	12	99,336
2022	8,772	5	43,860
2023	9,591	5	47,955
2024	10,394	2	20,788
2025	11,286	1	11,28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6]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해당 기간 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문제는 행정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

○ 이와 같이 퇴직금 산정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문제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법령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 사안으로 보이며, 예산의 추경 확보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향후 재가관리사 고용 및 퇴직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운영 매뉴얼 개정, 표준계약서 정비 등)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일몰 사업이므로 추후 유사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참조가 필요할 것임.

---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본 사업과 같이 자치구와 계약 당시 운영메뉴얼에 따른 계약이었다고는 하나 예산 사업의 인건비 지급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이 소홀히 관리·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